| 고용노동부 | 보도자료 | 한국판뉴딜 |
|---|---|---|

| 보도일시 | 2021. 12. 3.(금) 조간 *인터넷 2021. 12. 2.(목) 12:00 이후 / 총 6쪽 | | 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| 과 장 박종일<br>사무관 신정욱 | 044-202-8850<br>044-202-8853 |
|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팀 | 팀 장 이동욱<br>차 장 이중곤 | 052-703-0640<br>052-703-0615 |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 최근 사다리에서 사망사고 다발!
# 안전한 사다리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

■ **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비계, 지붕만큼 떨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**

□ **고용노동부**(장관 안경덕)와 **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**(이사장 박두용)은 **최근 사다리에서 사망사고가 다발***하고 있어 작업 시 **각별한 주의**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* ('21.8월) 1명 → ('21.9월) 2명 → ('21.10월) 5명 → ('21.11월) 4명

○ 사다리는 **설치·사용의 간편함**으로 인해 산업현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작업도구이나, **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*까지 발생**할 수 있어 **작업 시 안전작업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.**

* **(연도별)** 45명('18년) → 43명('19년) → 30명('20년) → 25명('21.9월)

□ 최근 3년간('18년~21.9월)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**사고사망자는 143명**이며, **사망사고 전체 기인물 중 다섯 번째를 차지**하고 있다.

| 사고 기인물 | 계 | '18년 | '19년 | '20년 | '21년 9월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사고사망 | 전년동기 | 증감 |
| 계 | 3,386 | 971 | 855 | 882 | 678 | 660 | 18 |
| 차량 등 | 502 | 138 | 121 | 134 | 109 | 106 | 3 |
| 비계 | 221 | 73 | 48 | 51 | 49 | 38 | 11 |
| 지붕, 대들보 | 197 | 39 | 56 | 56 | 46 | 40 | 6 |
| 인양설비·기계 | 146 | 48 | 33 | 38 | 27 | 31 | -4 |
| 사다리 | 143 | 45 | 43 | 30 | 25 | 23 | 2 |
| 기타 기인물 | 2,177 | 628 | 554 | 573 | 422 | 422 | 0 |



○ 특히 업종 특성상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**건설업과 시설관리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4%(106명)가 발생***했으며,

* **(건설업) 86명, (시설관리업) 20명**, (제조업) 17명 순, (그 외 사업) 20명

○ **규모별**로 볼 때 **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**에서 **건설업 사다리 사고의 72%(62명),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설업 외 업종 사다리 사고의 89%(51명)**가 발생했다.

* **건설업(총86명) (~1억) 39명, (1~3억) 15명, (3~10억) 8명,** (10억~) 24명
**건설업 외(총57명) (~10인) 37명, (10~30인) 14명**, (30~50인) 4명, (50인~) 2명

○ 사다리에서의 추락은 **상부에서 작업***하는 도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**대다수****(71.3%, 102명)로, **추락 높이**는 **3.5m 이하에서 65.7%(94명)가 발생**했으며, **2m 이하 높이에서 사망사고도 전체의 22%(31명)**를 차지한다(붙임 1 사다리 사망사고 사례 참고).

* **(건설업)** 도장, 설비 설치·해체 등 **(건물관리업)** 설비 점검·수리 등
** 사다리를 오르내리던 중 떨어지는 사고 28%(40명), 넘어지는 사다리 맞음 1명
*** **(~1m) 3명, (1~2m) 28명, (2~3.5m) 63명**, (3.5m~) 25명, (자료없음) 24명

○ 최근 발생한 사다리 추락사고*도 낮은 높이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등 **높이가 낮아도 위험은 상존**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* ▲('21.10.21.) 전지작업을 하던 중 2.1m 아래로 떨어짐, ▲('21.10.21.) 배관에 걸린 슬링벨트를 제거하고 내려오던 중 1.4m 아래로 떨어짐, ▲('21.10.14.) 조경작업 중 0.6m 아래로 떨어짐

□ 이와 같은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**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**적이다.

○ **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곳**의 **평탄한 바닥**에 **A형 사다리**를 설치하되, **안전모 착용, 3.5m 초과 및 최상부 작업금지** 등 **안전작업방법을 준수***해 사용해야 한다.

* 붙임 2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참고

□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'**현장점검의 날**'과 상시 진행하는 불시 점검인 '**패트롤 점검**'을 통해 **사다리 작업을 중점 점검**하며

* **(점검사항)** ▲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, ▲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, ▲3.5m 초과 높이 사용금지, ▲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등

○ **떨어짐 사고**의 **주요 기인물**(사다리, 로프 등)은 안전한 품목(타워형 작업대 등)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**재정 지원***을 병행하고 있다.

* 클린사업 중 시스템비계 등 지원예산 : 554억원('21년) → 714억원('22년 예정)

○ 한편, 사다리의 주요 위험인 **떨어짐을 방지**할 수 있는 **사다리를 제작·보급**하기 위해 **안전 사다리 제작기준**을 새로 마련할 예정*이다(~'22.1월).

* 「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」, 「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」 등 개정 검토

□ **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**은 "**낮은 높이**라 하더라도 **안전조치를 외면할 경우 사망사고는 언제든지 발생**할 수 있다."라며,

○ "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**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**해야 한다."라고 강조했다.

○ 아울러, 사다리 작업과 관련해 "**안전모 착용, 낮은 높이**(3.5m 이하)에서 사용 등 **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**해 줄 것"을 당부했다.

붙임 : 1. '21년 사다리 사망사고 사례
2.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,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신정욱 사무관(☎044-202-8853)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중곤 차장(☎052-703-0615)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붙임 1 '21년 사다리 사망사고 사례

1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 미준수

**('21.10.15.)** 대전시 소재 공장 내 창고동에서 적재대에 걸쳐진 일자형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미끄러운 바닥에 놓인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2.3m 아래로 떨어져 사망

2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미준수

**('21.10.14.)** 충북 음성군 소재 야외 체육시설 내에서 조경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이동식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0.6m 아래로 떨어져 사망

3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미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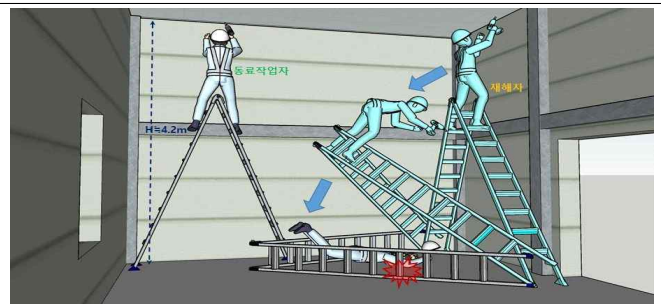


**('21.9.10.)** 충남 홍성군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 내 이동식 사다리 최상부 하단 디딤대에서 판넬 설치·마감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2.6m 아래로 떨어져 사망

**붙임 2**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

산재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입시다!

안전은 권리입니다

#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!

**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**

- 경작업, 고소작업대·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
  - * 경작업 :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, 전기통신 작업,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

**평탄·견고한 바닥에서**

-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
**3.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**

- 최대길이 3.5m 이하 A형 사다리(조경용 포함)에서만 작업
  - * 보통(일자형)사다리, 신축형(연장형)사다리, 발붙임 사다리(A형)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작업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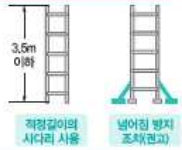


**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**

-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,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
  - * 작업높이 :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

**2인 1조로 작업하세요!**

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

- 1.2m 이상 ~2m 미만 : 2인 1조 작업,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
- 2m 이상 ~ 3.5m 이하 : 2인 1조 작업,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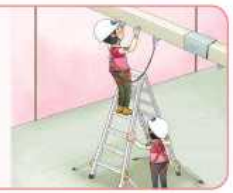

※ 본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→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



2021-사업총괄본부-779

#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

**보통(일자형) 사다리** | **신축형(연장형) 사다리** | **발붙임 사다리(A형)** (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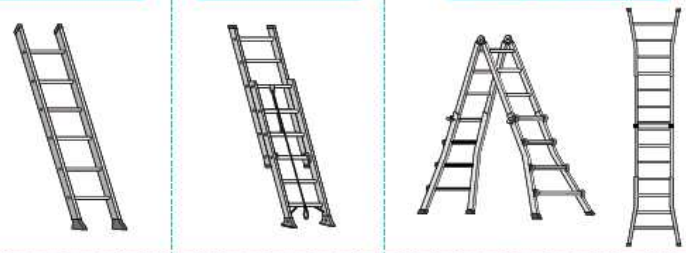

**안전작업 지침**

-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(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)
- 반드시 안전모 착용

※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 준수

**발붙임 사다리(A형, 조경용)**

| 작업 높이 (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) | 안전작업 지침 |
|---|---|
| 1.2m미만 | ○ 반드시 안전모 착용 |
| 1.2m이상 ~ 2m미만 | ○ 반드시 안전모 착용<br>○ 2인 1조 작업<br>○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|
| 2m이상 ~ 3.5m이하 | ○ 반드시 안전모 착용<br>○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<br>○ 최상부 발판 +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|
| 3.5m초과 | ○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|

**공통사항**

-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- 경작업*, 고소작업대·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
  - *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, 전기·통신 작업,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
  - ※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 준수
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

OPEN